第250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4年11月18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년도예산안
   가. 노동부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보험기금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

審査된案件

3.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 ····· 1
1. 2005년도예산안(계속) ····· 11
   가. 노동부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1
   가. 고용보험기금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래 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입니다마는, 양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의 후속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으로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3.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후속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시에 호텔 리베라 노사분규에 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장과 노사 양 측의 증인들로부터 분규 관련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정감사 이후 노사분규 해결 진행상황에 대한 대전지방노동청장의 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지난 국정감사 시 제기되었던 문제

의 처리방향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 정용하 신안레저 유성 리베라호텔 대표이사, 박홍규 신안레저 유성 리베라호텔 노동조합위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인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 나장백입니다.

리베라호텔 노동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은 사 측이 지난 7월 31일 호텔을 폐업하자 노 측이 노조 와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폐업철회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사 측은 인건비 수준이 인근호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경영악화로 인한 누적적자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 측은 사 측이 외형적으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임단협 관련 장기분규 끝에 지난 11월 27일 노사 간 쟁점사항에 합의했으며 12월 16일에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2004년도 폐업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5월 23일까지 우리 청에서는 사 측에 2003년도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5월 24일 우리 청에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한 것은 노사 간 2월 28일에 미합의 시 노동청장 조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이면합의내용을 제시키로 기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기본급 5%와 상여금 50% 인상, 노조전임자 2명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6월 19일 신안그룹 이사회에서 호텔 폐업을 결정했으며 6월 22일 호텔 총지배인이 전 직원 비상조회를 개최하여 7월 31일부로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7월 31일에는 근로자 213명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조치가 있었고 8월 2일에는 사 측에서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폐업 관련 관광등록증 등 14개 신고증을 반납한 후 서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폐업신고 이후 동향입니다.

8월 17일에는 우리 청에서 주관하여 폐업철회 조건부 노사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 사 측에서는 잠정합의안 외에 2004년도 9월과 10월분 임금과 2005년도 구정 상여금 50% 반납을 추가 제시함에 따라 노 측에서 수용거부함으로써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8월 23일에는 대주주 박순석 회장과 박홍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이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2003년도 임단협 합의서 무효화와 노조전임자 2명 해지 및 노조를 노사협의회로 전환 시 폐업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노 측에서의 수용거부로 결렬되었습니다.

8월 30일에는 사 측에서 호텔 매매와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호텔 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10월 7일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호텔 리베라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동향입니다.

10월 8일에는 우리 청에서 회장 비서실장과 총지배인으로부터 사 측의 향후 대처 방향을 청취한 후에 호텔정상화를 위한 노사 교섭을 주선하겠다고 통보하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 측에서 확약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 우리 청에서 노사에게 상호 교섭을 제의하였으나 노 측은 11월 4일 국회 환노위에서 박순석 회장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교섭할 경우 사 측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부한 바 있으며, 11월 5일로 교섭연기 요청을 하였고, 11월 5일에는 노사 양 측에서 11월 9일로 예정된 충남 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이후로 교섭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월 9일에는 충남지노위에서 동 사건에 대한 노사심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0일에는 저희 청에서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호텔정상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측은 호텔정상화 조건부로 노조의 자주성과 노조전임자 2명의 인정과 운영 적자요인 해소를 위한 노조원의 단계적 인건비 축소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 측에서도 11월 13일까지 사 측 안을 제시하면 검토한 후에 11월 15일까지 교섭재개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 측도 여기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에는 사 측에서는 노조원들 간에 충남지노위의 심문회의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하에서는 사 측 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사 측 안 제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입니다.

노사는 현재 충남지노위의 판정결과가 송부될 때까지 자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충남지노위 판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호텔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교섭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대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리베라호텔 문제와 관련된 국정감사 시에 발생된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칫 모든 위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예산 심의에 많은 지장을 주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님, 간사협의 시에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2004년 10월 7일 서울·경인·대전지방청 국감에서 단병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증인으로 나온 박순석 증인이 국회에 모독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 사실은 국회 모독으로 고발 조치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노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분규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단병호 위원께서는 노동 분규와는 별도로 국회 모독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제 단병호 위원의 문제 제기와, 또 배일도 위원과 저, 양당 간사 간에는 대전지방청장님의 객관적인 보고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대표를 각각 한 명씩 불러서 현재 노동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마 순서상 단병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단병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 두 분이 왔는데, 대전노동청에서 보고한 것에 사실하고 혹여 다른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진행 과정 속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 보시지요.

○참고인 박홍규 노동조합위원장 박홍규입니다.

11월 4일 사 측이 교섭 요구를 했고 노동청이 중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전화를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작년 11월 27일 노동청 중재로 합의되었던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고, 또 금년 조건부 폐업 철회를 8월 17일 노동청 중재로 실무 합의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체결권의 내용을 박순석 회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정용하 대표이사의 위임이 있어야 교섭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그런 의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병호 위원 사 측에서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참고인 정용하 먼저 이런 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병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호텔 리베라가 작년 2003년 11월 27일에 합의한 사항이 있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이면 합의도 했고, 부속 합의도 했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번복을 했지요?

○참고인 정용하 2003년도 것 말입니까?

○단병호 위원 합의한 당사자이시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못할 것이니까……

○참고인 정용하 그것 압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회사 측에 의해서 이행이 안 된 것이지요?

○참고인 정용하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대전지방청에서 원래 5월에 이행을 하라고 하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것도 수용 안 했지요?

○참고인 정용하 못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노동청에서 보고한 것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조건이 노조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봉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노조 전임자 없애라는 것, 그 세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회사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청에서도 얘기하고 했을 때, 회사 측의 주장은 노조를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로 하자, 그리고 연봉제로 하자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는 없애자 이것이 요구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정상화하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 합의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참고인 정용하 폐업하기 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살아보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합의하고도 그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줄곧 나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합의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것은 확인만 한 것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오늘 앉아서 다뤄야 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을 고발 조치하고자 했던 것은 노사문제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노사문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각자가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 나와서 박순석 회장이 증인으로서 보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회를 깡패집단이라고까지도 공언하다시피 국감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심대하게 훼손된 국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것을 놔두고 현재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다든가 외면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명확하게 박순석 회장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해서 합의를 끌어낼 것이 있으면 그때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하지 말고 명확하게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문제는 그 문제대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의 문제는 또 노사 간의 문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있으면 지켜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단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관계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국감에서 박순석 회장을 왜 불렀는가, 노사관계가 안 되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노조위원장 박홍규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박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회장을 즉각 구속시켜 놓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까?

○참고인 박홍규 저희는 박순석 회장의 구속 여부는 노동조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얘기할 수 있는 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해야 될 것은, 물론 박순석 회장이 국감장소에서 위원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자 해서

어제 처음으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회장에 대한 논의가 우선인지, 국감에 그 증인을 불러서 노사관계가 해결되고 해고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자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순석 회장 문제하고 노사관계를 별개로 하자는 단병호 위원님 의견하고는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것으로 보고, 노조위원장께서는 원칙적인 문제,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해서 국감장소에 불려나왔던 그 시점의 생각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노조위원장이 원하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회장한테도 노조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풀린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모독적인 얘기한 것을 언론이 있어도 좋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서 노조와 대화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위장폐업 관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노동조합하고 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자체로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노조와 대화도 못 하고 국회에서는 계속 모욕죄만 다루었을 때 처음 우리가 국감 시작할 때의 의도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의견을 물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우선 본인들의 노사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호텔이 문을 열어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논의한 것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 문제를 신문하고 논쟁을 벌이면 한정이 없는데, 앞으로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병호 위원님이 제기한 증인의 국회에서의 모독발언 사건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노사문제가 해결이 잘 이루어지면 위원들이, 사실은 위원들 개개인의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인데, 다른 노사관계가 잘 진행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경감을 하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독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자 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든가 독립적으로 하든가 분명히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너무 길게 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론을 펴자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사관계는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국회 모독에 해당되는 이런 심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을 참작해서 우리가 이것은 고려해서 할 것이냐 이런 논의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또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의 지점도 대단히 모호하고 서로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이고 이런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국회에서의 모독 발언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들 각자가 바로 고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기본 생각에 의견을 붙여서 얘기하셔도 좋고 독립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각자 고발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두언 위원 의사 표시를 돌아가면서 다 한 마디씩 해야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말하실 분만 말하시고 찬반양론이 있으면 제가 표결로 의견을 들어볼 것이고 의견이 없이 고발하자고 그러면 그냥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고발 여부는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오늘 상정된 의안은 분명하게 지난 번 국감장에서 박순석 회장의 발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한 처리건을 상정하려면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협의를 거치고 나서 전체 토의에 붙일 것인지 아니

면 바로 결정할 것인지 방향으로 잡고 처리해야지,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유의사 표현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이 건을 다루려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일단 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 분을 출석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코자 하는 그 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이었고 하나는 이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노조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의사진행발언을 물으셨으면 위원장의 유권해석을 들으시고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정리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이 거기서 사회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어제 여야 간사회의를 한 것은, 바로 박순석 회장의 고발과 관련한 의제를 사실은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고발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노사분규가 성의 있게 제대로 잘 마무리됐다면 고발여부에 대해서 경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오늘 세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절차상으로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시기 전에 의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후속으로 오신 분들에게 질의를 해서 타결여부에 대한 의사를 듣고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결정을 하자든가 하는 의견을 내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질의하세요.

○배일도 위원 바쁜 일정 속에서 세 분 모두 다 나와 주셔서 반갑고요.

저희가 박순석 증인을 불렀던 것이 증인 얼굴 보고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라고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호텔 리베라의 노사관계가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장기간 분규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법의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고 보아서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법률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되고 집행단위인 노동부가 잘못했다면 노동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노사 간에 잘못이 이루어졌다면 행정관청에 제기해서 그런 잘못을 시정케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도중에 문화의 차이 또는 객관적인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고성이 오갔고 또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했던 것이 지난번 사건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사관계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해결여부를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참고인 박홍규 저희는 정상화의 내용이면 협상을 단 한 차례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권자의 내용이 있을 시에는 저희는 항상 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노동청 중재로 회사와 만났고, 거기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유지해 주고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많은 폭을 열고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바쁜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사 측 대표로 나와 주신 정용하 씨 고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참고인 정용하 저희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중재 하에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조와의 물밑 대화가 위장폐업 문제가 걸림돌로 걸려 가지고 지금은 노조와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회사 측에서 노조를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참고인 정용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본인 이름으로 해서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정용하 이번에는 없는데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참고인 정용하 예, 종료가 됐습니다.

○배일도 위원 노조에서 회사를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홍규 체불임금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 건이 폐업의 위장성 여부에 직접 영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회사는 판단해서 폐업을 했는데 이 폐업이 사실상 노조가 집단적인 요구를 해 오니까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폐업이 되면 이것은 위장폐업이 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현재 노사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박홍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노위 심판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위장폐업 내용 외에 그것과 별개로 정상화를 위한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방청장님, 지노위 위원장이 안 나오셔서 그 부분의 사실확인을 청장님한테 대신 확인하겠는데요. 현재 위장폐업이 인지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조의 고발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참고인 나장백 위장폐업여부 조사는 저희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장폐업문제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중인 사건하고 저희들이 조사 중인 사건하고 같이 합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건은 없습니다.

○배일도 위원 노사가 만약에 자율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문제는 처리가 쉽지요?

○참고인 나장백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노사가 만약에 자율로 해결하면 그게 위장폐업이라고 해서 호텔 리베라 측에 처벌이 가해집니까?

○참고인 나장백 현재 위장폐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위장폐업을 선별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위장폐업이라는 것을 조사하는 데는 시기가 조금 이르고요. 현재 상황은 양쪽에 잘 얘기를 하면 노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배일도 위원 사 측에 묻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참고인 정용하 해결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언제까지?

○참고인 정용하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제소사건이 끝나면 바로 의지를 가지고……

○배일도 위원 노조의 주장 중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인 정용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한테 아무런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배일도 위원 어쨌든 조건만 갖춰지면 빨리 문을 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정용하 저희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토론을 하고 살 방향을, 정상화보다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된다는 것도 좋지만 정상화 그 이상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소사건의 법적 절차가 끝나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노조위원장에게 묻겠는데요. 저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믿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홍규 저희는 현재 5개월간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결과 이전에 정상화하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그것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방청장님, 노사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방 합의될 것도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나장백 지금 사 측에서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작년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골이 좀 깊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사 측에서 요구하는 안이 고통분담이기는 하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판정결과가 계류되니까, 이런 결과는 노사 양측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서 양쪽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협의를 할 것인데 그 전에라도 저희 청에서는 최대한도로 노사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회가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서 중재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고발여부에 대한 정상참작을 위한 사실확인 관계로 오늘 이 모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순간에 박순석 회장의 국회 모독발언에 대해서 꼭 고발해야 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주 위원님!

○김형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이 건은 참고인을 안 부르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단병호 위원님의 지적과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러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노사합의까지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가지 사안은 사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지방노동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오후에 바로 이 문제를 결정하든 아니면 유보하든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올 연말 안에 일정 정도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면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무한정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봐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아주 냉정하게 이 건이 아주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건입니까?

○참고인 나장백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노사 양 측에서 저희 청에서 교섭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사안을 설명하면 잘 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서로 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양 측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양보가 되어야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판정사건이 걸려 있는데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다. 그 전에 양 측 입장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오늘 참고인으로서 나오신 정용하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협조적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일정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논의를 길게 가기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별도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정용하 대표이사는 왜 약속을 하고 맨날 어깁니까?

○참고인 정용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어기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이것이 술 먹다가 개인하고 한 약속도 아닌데 도대체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사경영을 원래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참고인 정용하 예, 지키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한말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노동법이 물러서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노사 간에 신뢰가 생깁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고인 정용하 제 개인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법보다는 노사의 신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참고인 정용하 저희 회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한말씀 더 할게요.

우리가 18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임금을 깎자, 뭘 어

떻게 하자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노조를 노사협의회로 하자고 하는데 무슨 발상이 이렇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노동부도 물러터진 거예요.

저는 나머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해서 빨리 합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를 없애고 노사협의회를 하자,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와 대등한 파트너인 노동자를 머슴 취급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호텔 리베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고인 정용하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아니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참고인 정용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빨리 정상화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정용하 예.

○이목희 위원 이것은 약속한 것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건으로 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려운 조건에 있는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는 일단 박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심의·표결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고발여부에 대한 의결을 늦추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공성진 위원님!

○孔星鎭 委員 공성진 위원입니다.

박순석 증인에 대한 고발건하고 호텔 리베라의 노사분규건은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는 간사 간에 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고발건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선례를 보거나 앞으로 당사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경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이 사안은 우리가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호텔 리베라 노사분규를 우리가 국감에서 문제삼았다고 하는 것과 그날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 그리고 그날 박순석 증인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위원장 두 사람이 다 바로 다음날 합의를 할 것 같이 양보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저희 위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날 사실은 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용자 측도 이런저런 이유로 좀 회피해 왔고 노동자 측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물론 이것이 분명히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었지요.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해서 고발했으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목희 위원님 의견이나 비공개로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오늘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비공개 여부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두언 위원 저는 이 문제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것은 전혀 몰랐고요. 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하고, 아까 공성진 위원께서 제안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일도 위원 이 건을 지금 여기서 처리하자고 결정이 나도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회법이나 사회 통상 관례로 보아서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는 투표를 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고요.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의사를 듣고 그것을 표면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 대단한 하자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처리 방향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사람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여야 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결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의결을 연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장복심 위원 아니, 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이 최종 선언하고 난 다음에 말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복심 위원 리베라호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전 위원들이 시간을 다 쓰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도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때 대전지방노동청장님은 공무원의 소신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결하겠다…… 우리는 지금 '노'나 '사'가 중요하지 않고, 노동청장님이 나서서 양쪽을 중재하기 바랐는데 그것이 안 되네요. 노력은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참고인 나장백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적당히 하시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놔두신 것 아닙니까?

○참고인 나장백 아닙니다. 그 교섭 현황을 노사 쌍방 간에……

○장복심 위원 이 두 분들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복심 위원 이런 여건이면 오늘 우리가 부른 것이 또 한 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여기서 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연기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의사진행입니까?

○조정식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또 신문하고 그러는 것은……

○조정식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 겸해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말씀하세요.

○조정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원래 예정대로 되어 있던 노동부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의견들은 두 분 간사들께서 감안해 가지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간사께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하시고……

지금 여기서 계속 지루하게 토론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일단 간사에게 위임해서 시간을 두고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해서 의결할 것이냐, 여기서 의결하자고 그러면 비공개로 표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 여부만 여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간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간사에게 위임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단병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을 하기 전에 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의 안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묻는 안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재 묻는 안은 박순석 회장의 고발건을 오늘 의결하지 말고 별도의 시간을 구해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 의견도 아까 이목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로 한시적인 기한을 얘기했고, 또 그런 것 없이 무한정 얘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안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의견을 정리할 때는 안이 명료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간사에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위임을 하되, 그 기한은 정기국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연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세요.

열세 분 중에서 열 분이 연기하자는 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간사에게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계속)
가. 노동부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보험기금
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시07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노동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노동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0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효율적인 분쟁 예방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청소년·장기실업자·고령자·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 개편을 내년 중으로 완료하고,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고용 안정 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산업사회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충 등을 통해 노사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사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세출안의 총 규모는 8255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7%, 5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6931억 원, 재정융자특별회계 800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0억 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억 원입니다.

한편 노동부가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의 내년도 총 운용 규모는 19조 3121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8.3%, 즉 1조 477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11조 9764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조 3117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143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09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007억 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2005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최병훈 기획관리실장 최병훈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총괄,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용, 그리고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사갈등 사전 예방·사후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그간 상임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월사업 축소 등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2억이 증가한 86억으로 편성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와 고용안정센터 기능 개편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납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내역별로는 전년보다 이자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증가되고, 토지매각대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518억이 증가한 82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가 800억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197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사업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고용 안정 인프라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센터 운영에 247억 원,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에 408억 원을 반영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에 11억 원, 고용정보 제공과 청년실업자의 해외취업 지원에 132억 원, 고용안정전산망 관리에 76억 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 지원에 6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24억 원, 구인 업체 개척 지원에 55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258억 원,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자활 지원입니다.

먼저 자활취업촉진사업에 23억 원, 직업적응훈련사업에 20억 원, 자활직업훈련사업에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 유망직종의 취업 유망 분야 훈련과 최근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훈련에 4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모자보호 대상자, 농어민 등의 고용촉진훈련에 101억 원, 노사 단체의 노사협력 능력 개발 지원에 2억 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직업훈련기관 확충·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직업전문학교 운영, 자격검정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에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대학 운영, 지식기반학과 개편 등 학교법인기능대학 운영에 759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 시설장비 보강, 학부생활관 확충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에 1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복지사업입니다.

노동단체의 노조간부 교육 등 노사협력 지원으로 56억 원,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에 15억 원을 반영하고, 노사관계발전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0억 원 증액된 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77억 원, 한국노동교육원 운영 지원에 6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58% 증액된 25억 원을 반영하고,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사업입니다.

먼저 노동 관련 사이버민원의 집중 처리를 위해 설치된 종합노동상담센터 운영에 9억 원, 중소기업의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5억 원, 임금·직무 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노동관서 민원상담실을 확대·개편하여 임금 체불 해소 등 권리구제 강화에 2억 원, 임금채권 보장 업무 수행에 따른 기금 재정 지원 및 근로감독 업무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평등사업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식 확산 등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지원에 5억 원, 여성가장 실업자에 대한 취업 훈련에 24억 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에 20억 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 지원에 900억 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을 위한 고용평등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사업입니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84억 원을 편성하고, 진폐위로금 지급 예산으로 4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34억 원,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및 진폐 예방 관리에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노동외교활동 지원입니다.

2005년 10월 개최될 제14차 ILO 아태총회 개최 비용으로 14억 원, ILO와 OECD 등 국제기구 협력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에 295억 원, 노동행정 정보화 전산관리 및 혁신 서비스 지원에 106억 원, 노동정책 연구개발 및 노동 통계조사 실시에 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어서 노동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노동부소관 5개 기금의 2005년도 운용규모는 총 19조 3121억 원으로 2004년도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의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보험료 3조 2299억 원, 이자수입 3737억 원, 융자금 회수 637억 원 등 총 11조 9764억 원으로 2004년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고용안정 3632억 원, 직업능력 개발 6769억 원, 실업급여 1조 6837억 원 등 총 2조 7885억 원을 지출하고 9조 1879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사업의 주요사업 계획안입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신속한 재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 339억 원, 전직지원장려금 37억 원, 재고용장려금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지원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316억 원,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169억 원,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787억 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611억 원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4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 장려금 78억 원,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97억 원, 교대제전환 지원금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183억 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101억 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100억 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1189억 원,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254억 원,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762억 원, 검정수수료·교재비 등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부족분야 훈련 실시입니다.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부위탁훈련으로 831억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 등 948억 원,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원 238억 원, 기업 내 인적자원 개발담당자 연수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로 1조 4563억 원, 취업촉진수당 1103억 원, 연장급여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고용촉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51억 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을 위해서 473억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573억 원, 고용보험 연구 등 27억 원, 고용안정센터 청사매입 등에 436억 원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종합직업체험관 10억 원, 뉴패러다임 컨설팅 시범사업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기금 개요와 주요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재기금의 수입은 보험료 3조 6853억 원, 이자수입 1779억 원, 여유자금 회수 2조 1822억 원 등 총 6조 3171억 원으로 2004년도보다 10.6% 증가했으며, 지출은 보험급여 3조 1299억 원, 근

로복지공단 2042억 원, 산업안전공단 1341억 원 등 총 3조 7227억 원을 지출하고 2조 589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계획안으로 먼저 보험급여 지급입니다.

요양급여 9517억 원, 유업급여 9707억 원, 장해급여 7887억 원 등 총 3조 12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출연입니다.

먼저 산재근로자 요양시설 확충 및 직업재활 지원으로 중증 고령 산재장해인에게 적절한 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6억 원,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화 203억 원, 직업훈련비용 지원 등 직업재활사업에 302억 원, 직업재활훈련원 운영 32억 원,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지원에 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지원 등으로 산재보험 위탁운영 지원에 1014억 원, 산재보험 적용·징수 등 사업수행경비 지원에 307억 원,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64억 원, 양산지사 청사건립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입니다.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입니다.

사업장 기술지도 대행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78억 원,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123억 원,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에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의식 제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자료 개발·보급을 위해서 101억 원, 산재통계 및 안전보건 정보망 관리에 30억 원, 안전의식 제고 홍보 56억 원, 국제협정에 의한 국제협력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사업의 운영지원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726억 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설치를 위해서 15억 원,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재근로자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입니다.

생활정착금 융자 100억 원, 대학 학자금 융자에 45억 원, 자립점포 임대지원에 100억 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으로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연구 및 예방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제도 연구사업 지원에 9억 원,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기금의 개요와 주요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주 부담금 944억 원, 사업주 변제금 541억 원, 이자수입 113억 원 등 총 4143억 원으로 2004년보다 15.5% 감소했습니다.

지출은 체당금 1712억 원, 근로복지공단 출연 129억 원 등 총 1865억 원을 지출하고 2278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안입니다.

체당금 지급입니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17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기금 개요와 주요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주 부담금 1220억 원, 융자금 회수 33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등 총 3007억 원으로 2004년보다 3%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장려금 140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연금 922억 원, 융자사업 430억 원 등 총 2816억 원을 지출하고 191억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창출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1402억 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장애인 시설설치비용 융자에 150억 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170억 원, 자영업 전세금 융자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및 직업생활지원으로 취업알선사업에 14억 원,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에 14억 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5억 원, 장애자고용관리비용 지원으로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5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운영에 68억 원,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에 25억 원,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훈련 지원에 2억 원,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1억 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조사·연구사업에 17억 원, 고용정보관리사업 20억 원, 홍보대외협력사업 13억 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2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사업 지원입니다.

직업상담 및 평가 등 직업지도에 36억 원, 직업적응훈련 50억 원, 지원고용사업에 28억 원,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에 5억 원, 적응훈련 실시기관 지원 22억 원, 직업재활 전산망 운영 2억 원, 기타 직업재활사업 운영지원에 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361억 원, 이자수입 188억 원, 융자금 회수 707억 원 등 총 3092억 원으로 2004년도보다 25.9% 감소했습니다.

지출은 중소복지사업 1159억 원, 신용보증사업 204억 원, 실업대책사업 823억 원 등 총 2186억 원을 지출하고 906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복지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340억 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에 240억 원,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으로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최에 6억 원, 근로자 휴양시설 지원 10억 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43억 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지원에 10억 원, 복지시설 이용지원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사업입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사업에 171억 원, 신용보증지원 사업운영에 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에 250억 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에 150억 원, 관광통역안내원 배치에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부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동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동부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하고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5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 증가하여 정부 전체증가율 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8% 감소한 6931억 3200만 원입니다.

노동부소관 5개 기금의 2005년도 총 규모는 2004년도 계획대비 8.3%가 증가한 19조 3121억 원이며 지출규모는 2004년도 계획대비 15.4%가 증가한 7조 19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동부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86억 5400만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00만 원 등 총 8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촉진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회수금,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임차보증금 반환액 등으로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의 임차보증금 반환액으로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통폐합되는 동 센터의 임차료 반환액의 일부로서 나머지 센터의 임차보증금 반환액도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입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동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주40시간제 교육·홍보사업, 노사협력능력개발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총 38억 54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주40시간제 교육·홍보사업은 행정대상 83만 4000여개소 중 약 2.4%인 2만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의 부족과 근로감독관의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감독관 충원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협력능력개발사업은 노사협력사업과 성질상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안정기관 운영의 경우 2003년도부터 획일적인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도 155개의 고용안정센터를 2005년도 말까지 112개로 조정할 예정이나 통폐합에 따른 예산의 절감효과가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의 2005년도 예산액은 62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2%가 감액되었는데 이러한 감액은 예산의 과다한 이월, 불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의 집행내용이 부진하여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훈련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훈련실시인원은 목표인원을 상회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훈련의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중도탈락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취업률 또한 저조한 실정이므로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일반실업자 직업훈련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기초적응훈련과정의 실시, 정착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지역노사관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의 지원근거인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원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기금적립금이 소진되어 2005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50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00억 원만 반영되고 부족분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800억 원을 차입하여 지원액은 9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나 재특회계에서 차입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전년도보다 667억 1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33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운영되었음에도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통합 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명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지출계획안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계획대비 실적이 2003년도 1.0%, 2004년 8월 말 현재 2.9%로 극히 저조함에도 2005년도 예산액은 21.2%가 증액된 68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뉴패러다임 컨설팅 시범사업은 노동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수시과제 연구비의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타 부처 소관 연구단체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산업보험급여 책임준비금제도는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2002년도에 4232억 7400만 원, 2003년도에 8126억 1600만 원, 2004년도에는 1조 1182억 93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적립금 부족액은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어 보험요율 인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부족액 충당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료 수납률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일괄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씩 드리고 일괄질의인 경우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법안, 노사정 사회적 합의 틀의 복원……

노고가 많으신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도 완벽하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경우가 없다, 그것을 떠나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노동운동, 국민의 다수가 외면한 운동은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무원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대응해 온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나온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고발한다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하고 징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중을 가리고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교하는데 저는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98년도에 전교조, 교원노조법을 만들 때 저하고 전교조 대표하고 교육부 대표 세 사람이 하룻밤에 다 합의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만 풀어 달라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사실은 저녁 먹고 나서 12시 되기 전에 합의한 겁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법은 전 교원노조법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푸는 이런 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중을 가리고 상황을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권한을 노동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불행한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로 인해서 불편과 걱정을 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라도 나서서 그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 지난 2년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못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전임자를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단체협약을 만들고 그 밖에도 많이 일이 있습니다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는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 부정부패의 감시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정부 당국이, 우리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목희 위원 음주와 산업재해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나왔던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일부에서 격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다…… 저는 이런 일부 노동단체나 시민·사회 단체가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단속하는 것도 인권 침해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겁한 행태가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주와 산업재해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국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산재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가 몇 %, 몇 명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미국의 국립알콜남용및알콜중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0%, 부상자의 63%가 음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압니까, 모릅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래서 음주에 관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것만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참 공무원 특유의 답변이시군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 그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대단히 감성적으로 반론을 편 데 대해서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지적 자체를 마치 어느 쪽을 편을 들고 어느 쪽을 공격하는 것 같은 논리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근로문화가 예컨대 육체노동을 하는 작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약간 술을 해야만 오후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잘못된 문화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노동부에서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음주문화의 개선 내지는 단속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동료가 죽고 다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욕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노조가 용인하면 일부가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겁함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직업훈련제도를 쇄신할 계획과 예산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이 기존의 프로그램 속에 그냥 들어가 있고 별다른 특징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위원의 지적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저번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실제로 직업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인의 말씀 중에는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받은 3500만 원을 담보로 해서라도 창업지원자금을 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이 딱 저희 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노동부가 매우 좋아하지 않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 재난이 온다, 이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고용보험기금이 9조 원쯤 쌓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전후 휴가가 30일은 고용기금보험에서,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기금이 전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성보험인데 건강보험기금에서 하지'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정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당한 규모의 흑자로 돌아섭니다. 건강보험기금을 갖고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반대하는 줄 압니다마는, 다 반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 분을 이제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난번에 이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하고 또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현재 30일 부담하고 있는 것을 60일 정도로 30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

는데 오늘은 여기에 더 넘어서 90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60일 부담만 하더라도 답변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더 크게 혹을 붙이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그래도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안은 내겠습니다마는,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데 60일에서 90일로 갑자기 불과 몇 달 사이에 늘려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목희 위원 저한테 질의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돈이 1300억 원이냐, 2000억 원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1300억 원이나 2000억 원이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으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고용보험기금으로 30일을 지원할 때에 이 위원께서 속한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부대의견의 정신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늘리라는 부대의견을 결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노동부가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펼쳐놓고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법안이 지녀야 할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정규직 차별이 축소되고 해소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되 사회안전망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원칙을 잘 관철할 수 있는 지점이 좋은 법안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제안이기도 한데, 이 법안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에 그냥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星鎭 委員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5분 정도만 질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존경하는 장복심 위원님께서 엊그제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가와 시장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사실은 노동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다른 교육기관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장애인의 이러닝(e-learning), 전자방식 교육을 위한 예산안이 내년에는 1000여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금년까지는 한 1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이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장애인의 이러닝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장애인 이러닝 그 항목만은 제가 따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孔星鎭 委員 특히 노동부로서는 사회안전망,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혹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장애인도 그 중에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인 재활을 위한 IT 프로그램이라는 주제의 국제대회에 축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노동부 관계자는 제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IT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보조용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부 특허 내지는 발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과 달리 눈이 안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팔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보조장

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국제회의체입니다.

상당히 큰 회의체인데, 이런 것들과 연계되지 않는 이러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IT에 관련된 재활 장비 이런 것도 사실은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바로 그러한 장애인들의 이러닝 학습을 위한 것을……

○孔星鎭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14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공단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공단 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입니다.

○孔星鎭 委員 그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고용평등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렇게 하세요. 5분 안에 끝내려니까 참 시간이 많이 가네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입니다.

올해는 3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내년까지 연동이 되고요. 내년에 14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콘텐츠 개발이 올해 내년에 걸쳐 있고 내년 것은 운영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孔星鎭 委員 콘텐츠 말고 하드웨어 개발은 안 합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하드웨어는 보조공학센터를 올해 건립해서……

○孔星鎭 委員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점은 관료적 특성이라는 것이 자기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연대 내지는 연계를 많이 해서 사회 저변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해버리면 국가가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시장과의 연계를 많이 해 주십사고 해서 내가 가서 축사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누가 오셨나 했더니 아무도 안 오셔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본 질의에 들어가서 저는 특히 교육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런데 최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졸업생이나 동문들을 AS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孔星鎭 委員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다 맞춤식 교육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커리큘럼에서부터 대학에서 혹은 전문대학에서 혹은 공업학교에서조차 그런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고용정보원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직까지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고 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그야말로 고용과 취업, 실업에 관한 데이터들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담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중앙고용정보원이 아니고 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실업자 취업이나 여성 가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노동부 산하 여러 기관에서 각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사회에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고용정보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인력들, 노인들도 필요하고 임금 차원에서 싼 노동력도 필요한데 그것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9억을 실업자 취업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4, 50%도 되지 않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정책 자체를 노동부나 정부 기관에서 전부 하기보다는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 및 일반 시민사회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따라서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孔星鎭 委員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새삼 강조를 드리고 특히 세태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배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워낙 정보의 수급이 사회 제 세력 간에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와 연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새로운 시도로서 이런 것을 많이 도입한 흔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중앙고용정보원의 기능이 노동부의 센터가 되어서 사회 모든 제반 세력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적으로 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정책은 고용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예산안 편성은…… 그런 시도를 시험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전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의 변경을 요청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방향으로의 변경을 공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孔星鎭 委員 맞춤형,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기업 혹은 서비스 산업마다 필요한 노동의 품질과 행태가 다르거든요. 이것을 전부 종합 취합해서 분배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한다면 지금보다는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좀더 정확도를 기하고 특히 강조하신 다른 부문과의 네트워킹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이외에 여성 가장, 실업자 직업훈련 내용, 사회적 일자리가 뉴딜정책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또 뉴딜정책을 안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당에서 긴급히 호출이 와서 남은 10분은 사랑하는 장복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공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성진 위원께서 당을 초월해서 성을 초월해서 질의시간 주고받기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사랑의 품앗이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0분 드리기로 했지만 실제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직업상담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보면 직업상담원 등 인건비가 408억,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정식 위원 그동안 고용서비스 선진화에서도 직업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화시킬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6% 정도 인상된 폭인데 일단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지금 항목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 직업상담원 노조와 노동부하고 임단협 때 '사업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적이 있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기타직 보수 전환 추진에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업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 상담원 노조와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열심히 했는데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이것은 순수한 예산 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고 또 다른 부처, 예컨대 건교부의 도로보수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원의 경우에 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조정식 위원 이것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확고한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상당히 확고합니다.

○조정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직업상담원 노조 같은 경우 신분 안정 문제, 사실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정식 위원 임단협 때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보통 사업비라는 것이 사업 양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수용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원래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국 거기까지는 못 했고 다만 인건비 항목 내의 사업비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정식 위원 인건비 항목 내 사업비 이렇게 된 거예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인건비 내 사업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항목이 가기는 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직 보수에서 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정식 위원 그러면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계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지금 그것도 되고요.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대체로 수용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실리적인 고려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2005년에 공무원보수가 동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직업상담원의 보수를 인상시키는 길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조정식 위원 그런 점에서 6.0%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기는 한데 여전히 신분의 불안정 문제는 남는 것 같고……

○노동부장관 김대환 신분 문제는 사실상 57세까지 반복해서 갱신을 하도록 했으니까 고용안정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직업상담원 노조는 거의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입니다.

내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가 공무원들한테 도입되는데 일단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이 안 됩니다. 예산처 쪽에서 제외를 한 이유는 일단 내년도에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는 데 비해서 상담원 인건비를 상당 부분 인상했기 때문에 선택적복지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처우를 개선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제외를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동결된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6% 증액되었다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분상 봤을 때 직업상담원들이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지금 예산처에서는 일단 그런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처음 공무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상담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처우를 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예산처와 협의를 통해서 도입하려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인건비를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제기한 바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비가 약 1013억,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가 약 726억으로 대략 총 1739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작년에도 58억이었고 올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증가 없이 그대로이고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2009년까지 늘릴 계획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기금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 운영비로 나가는 기금이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약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공단 운영비는 기금에서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리상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정 여건상 기금으로……

○조정식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노력을 하셨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현재 정부의 일반회계 사정도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런 운영비와 관계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운영비를 전액 증액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모양새라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모양을 하는 것이 일반 원칙에도 맞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회계 지원이 약 58억인데 여기에서 최소 두 배 정도 해서 약 115억 정도만이라도 일단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충당이 되면 실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비중을 조금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본 위원은 58억을 약 두 배 정도 증액해서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이 굉장히 어렵지요? 자료를 보면 내년에 약 3007억 원…… 다른 기금은 수조 원대인데 이런 상태로 가면 고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수입·지출 계획을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4년도에는 430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00억입니다. 약 330억이 줄었지요. 그 대신 2004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재특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특융자지요? 이것이 약 800억 늘었지요?

그런데 재특융자 이자가 5%이니까 약 40억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실 부담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것도 사정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노동부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약 500억, 재특융자 500억 해 가지고 1000억을 신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반회계 관련된 것은 대폭 깎이고 재특융자 금액은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가뜩이나 기금 고갈이 예정된 취약한 기금 재정에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반회계와 재특융자의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가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지원은 깎이고 나머지 부분은 재특융자로 하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조정식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노력은 했는데 다 깎였다고만 얘기하시니까 한편 답답한 생각도 드네요.

장애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 대개 시각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주로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안마시술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기존에 했던 안마 기술만

으로 취업이나 생계에 한계가 있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노동부 내에 이들에 대한 직업 재활이라든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최근 급격한 상황 변화 이후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장애 유형별 취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계속 고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TFT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감안한 다양한 서비스 관계된 것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보다 강구하시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계를 제가 전반적으로 죽 검토를 하고 짚었는데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존치평가보고서라는 것이 지난 여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같은 노동부의 기금 관련해서,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지적한 것에 의하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폐지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평가했더라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저도 그것대로 다 수용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관련해서도 지난 2002년 3월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두 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정두언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년 예산 심의 때 이것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취업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해서 1개소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생각나요.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30만 원씩 줍니다. 겨울에 그것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주려면 제대로 주지 이것 주고 쳤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0만 원 주면 인건비도 안 되고 운영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입니다.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원 단가만 현재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처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단가만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졌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 내용을 달리 하면서 지원 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톱다운 예산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을 줄여서 이왕 할 것 제대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올해는 그것이 안 되는 거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사업 중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취업 지원자하고 연수 지원자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대부분 민간 기업은 안 되니까 공공기관에 집중되는데 저도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 친구들 사실 아르바이트도 안 해요. 거의 다 앉아서 책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수고한다고 인사하면서 책을 보는 친구들은 왜 저러고 있나 보면 그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놀고 있는 것이 딱하니까 용돈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간 당초 지원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지 말자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줄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줘야 되는데 장관님이 그때 수차 답변하신 대로 현실과 취지와의 갭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메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 예산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감액을 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민간 기업 쪽에 많이 소화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공공 부문에…… 공공 부문에 보면 두 가지 대비적인 행태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정두언 위원 현실하고 갭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언제 좁혀질 것인지 확신이 안 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수량적인 목표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데 취지에는 거의 안 맞고 거의 여성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그냥 있는 형편이라는 말이지요.

또 그런 것이 노동부 일개 부처에서만이 아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산림청 환경부 문광부, 7개 부처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회적 일자리는 우선 개념부터 사업 내용과 부처 간의 중복,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총괄 기능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고용정책실장 노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부분에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구상들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체계를 잡고 정비해 나가겠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자는 기본 방향을 밝혔고 그 계획에서 분명하게 노동부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되는 것이 옳다는 분위기들이 대체적으로 부처 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면 좀 다행인데 그것을 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지금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의 근거, 또는 몇 가지 법에 있어서의 특례 조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노동부고용정책실장 노민기 지금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유럽에 출장도 갔습니다마는, 다녀오면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들을 찾아보고 또 없더라도 저희들이 법안을 구상해 볼 생각입니다.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요 예측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장관님도 최대한 현실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의 실적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좀 줄이기도 했고, 그리고 연구 용역

을 시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내년 봄에 나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5월 말쯤 나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연구 용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연구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소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현실적인 수요 예측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는 것 정도는 심의관께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준비가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노동부장관 김대환 현재의 수준에서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리고 능력개발사업 관련해서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이나 수강장려금도 지난 결산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수강장려금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니까 몇 년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좀 누더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는 95.7%로 배를 증액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아마 노동부 생각은 홍보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 김대환 수강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홍보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그것을 늘려서, 정확한 수요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실적 대비로 감액할 것은 좀 감액하고 대상을 넓히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내년 예산까지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심층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더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마지막으로 노사협력복지사업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42억 원이 깎여서 11.9% 감소되었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증액입니다.

왜냐하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 5월에 완료되고 또 노동뉴스 발간도 그만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112억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42억이 깎인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이 70억 증액되는 것입니다.

장관님도 아마 모르실지 몰라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정확히……

○정두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돈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그런데 제목이 노사협력복지사업이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노사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많이 쓰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심 위원님, 너무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이 2분 30초를 장복심 위원님께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의 세입·세출 검토보고서를 보다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노사 관계 발전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100% 증가했습니다. 그중 노사 화합 행사 등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금액이 125% 늘어났습니다.

노사 협력 프로그램이 노사 관계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5건의 노사 협력 프로그램에 20억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영세한 사업장의 노사 관계가 협력적 노사 관계로 가기 위해서 정부 지원은 필요한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경마장, 새한미디어, 재능교육…… 재정적인 능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에도 꼭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노사 화합 차원의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좀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도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좀 있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함께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 우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의 2003년도 집행 실적이 몇 %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극히 낮습니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 집행이 150억 중에 1%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까지 526억 예산 중에서 4.5%인 2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의 집행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경기 회복 지연 및 사업장에서 중장년 및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 집행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2003년도 사업에 이번에도 68억 원이 편성되어서 오히려 21% 증액되었습니다. 2년 연속 한 자리 수의 예산집행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입니다.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 제도가 금년 초에 일부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지원 대상을 500인 이하 제조업체로 국한했었는데 이것을 전 규모 전 업종으로 확대했고, 현재 6개월간은 50만 원, 나머지 6개월간은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첫 6개월간은 60만 원, 나머지 6개월간은 30만 원씩 지원 수준을 앞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인상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중장년에 대한 2년간의 성과를 봤을 때 2년 동안은 노동부에서 논 셈이네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낮춘다고 해서 중장년을 기업에서 채용하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

○김영주 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에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배정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올 3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8억 예산 중 9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이 7.9%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 및 근로자 채용 실적이 낮고 사업 초기라 홍보도 미흡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고는 생각합니다.

동 사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11% 감소한 61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10%도 안 되는 예산 집행에 내년도에 600억이 넘는 예산을 또 책정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은 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체적으로는 김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도입되어서 실제 적용 기간이 1년이 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감액해서 책정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올해 중반에도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좀 감액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더 시급하고 효율적인 데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건의드릴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두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를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 대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나오면

거의 다 실업자가 되니까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실업자인 청년들의 직업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대학교에도 취업지원실 같은 부분이 많은데 대학교 자체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층의 직업 지도, 직업 상담, 채용 동향 등 노동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노동부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새로운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옮기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2004년 2월 8일 노사정위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합의에서 경총과 한국노총에서 실업자재취업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양자 간의 협약이 있었으면 빨리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까지 사업계획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이것이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노사정위의 합의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총과 노총의 합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긴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에게도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께서도 예산 반영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시·도 등 지역별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도 중앙 정부 중심에서 지역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역별 인적자원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인적자원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도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노동 시장 및 산업별 인력 부족 실태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김영주 위원 제가 사실 노동조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사 관계에 대한 예산을 거론했던 부분도 이제는 정말 경영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배정해서 노사 관계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현재 23개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기능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기숙사, 도서관, 능력 개발 전용 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 중 후생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북기능대학에서 후생복지관 건립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에 3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총 37억을 신청했는데 올해 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고 내년에 35억을 해서 신청한 것을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북기능대학의 후생복지관이 도서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후생복지관 예산을 불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관 건립은 도서관 건립 지원 완료 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전북기능대학의 후생복지관 예산을 불인정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위치가 시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서 복지관이 상당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기능대학 예산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기숙사 개·보수에 대한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기능대학 기숙사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2003년도부터 개·보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의 개·보수가 필요한 기능대학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지금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1개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한 곳이 세 곳 있습니다.

구미기능대학의 경우는 기숙사가 7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야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기능대학 등 6개 대학의 기숙사 개·보수 사업보다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전북기능대학의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해 35억 예산이 책정되고, 지은 지 26년이 넘는 기숙사 개·보수를 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비록 전북기능대학의 후생복지관 건립이 2004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지만 보다 시급한 기숙사 개·보수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은 좀 늦어지겠지만 보다 시급한 기숙사 개·보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은 맞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동일한 종류의 사업은 대체로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경우에는 2006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현재 계획대로 가고, 전북기능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필요는 한데 당장 먹고 자는 시설보다 더 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하는 것이니까 2006년으로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안에 관련된 것 조금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목희 위원께서도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목희 위원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노·정 관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며칠 전에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했었고, 또 26일에는 민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피하게 파업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 문제 등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라든가 태도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남미 쪽을 순방 중이신데 미국 LA에서 동포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 노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연대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들만의 노동 운동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대"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

들이라든가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라든가 단협을 가지고 파업을 할 때 그들의 이기주의를 항상 얘기해 왔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협의 얘기도 아니고 임금의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 800만이 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관점 등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양산시키는 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 판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80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의 문제인 차별 같은 것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한꺼번에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26일 파업을 하는 데 주요한 요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민주노총이 쟁점화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과연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자신의 이기주의에 의해 이런 요구를 가지고 파업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할 때에도 이기주의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를 했을 때도 마치 그것이 연대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 만의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노동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상당히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권위나 권력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풀려는 문제의식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평소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경제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노동 운동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조직 노조와 중소기업의 비 조직된 근로자들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소의 노력을 편의상 상층부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상층부 노조나 근로자들이 여태까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체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인식에……

○단병호 위원 장관님,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노동부장관 김대환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저도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하여튼 누가 봐도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 소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보아도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발언이 현재의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데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제 우리 장관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 민주화와 노동 운동 간의 관계, 또 노동 운동에 대한 문제 인식 등등에 대해서 평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아니면 장관으로서의 어떤 견해가 있을 테고 저는 또 노동 운동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의 견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 중에서 확인하고, 또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노동 2권을 대통령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깼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깬 공무원들의 정직성과 그다음에 성실……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신뢰의……

○단병호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듣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는데요.

언제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괜찮으시다면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그 시점에 정부에서는 행자부가 주도를 해서 공무원노동조합법도 아니고 공무원조합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쯤 후보 시절의 대통령께서 전공노 지도부들을……

○단병호 위원 지금 지도부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차 누구지요? 예, 차봉천 지도부하고 만나서……

○단병호 위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좋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도 잘 모르고 장관님이 보고만 받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만나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만나 가지고 2권만 보장해도 좋다고 약속한 바 없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조직의 어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 후보 때 아마 영남 쪽을 다니면서 영남 쪽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만나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고 조직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것이 공무원 전체 조직의,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이었던 것처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경솔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는 장관께서 노동 문제를 풀어 나가는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다니면서 노·정 간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노동부장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감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식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그것을 들어 가지고 공무원노조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얘기했는데, 도덕성 정직성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88년도에 노동 3권 법안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 그 발의에 다 동의했던 분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전공노……

○단병호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도 노동3권 보장한다고 발의했던 사람이고, 천정배 원내대표도 다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시기가 민주화 시기이고, 그때 분위기가 또 야당의 역할이 있을 때고, 그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했다가 시기가 좀 지나고 집권당이 되면 말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도덕성과 정직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덕성과 정직성을 얘기한다면 도리어 현 참여정부의 이런 공무원노동3권과 관련된 도덕성과 정직성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대선 시절부터 바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이야기했었고, 인수위 시절에도 확인을 했었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 줄곧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참여정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88년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특히 참여정부를 얘기하는데 천정배 원내대표 같은 분들, 지금 여당의 지도부입니다. 어쨌든 이부영 의장도 지도부입니다. 그 분들 다 노동 3권 보장해야 된다고 서명하고 발의했던 분들입니다.

노동부장관이 도덕성과 정직성을 얘기하려면 그 분들 보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요. 당신네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단히 단세포적인 발상과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장관께서 노동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중간 주무장관으로서의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노·정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역할은,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항상 정태적인, 항상 가운데는 아닙니다.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

는……

○단병호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고용안정센터 임차보증금 세입예산에 관한 겁니다.

내년에 고용안정센터 7개가 통폐합되고 반환되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3개 18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4개는 세입으로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알기로 아마 동일한 지방관서 내에서 다른 센터 통합을 위해서 쓸 적에는 그것이 내에서 그냥 이렇게 되고 관서가 다를 적에는 그런 것이 세입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정부 예산의 모든 것이 세입으로 잡히고 모든 지출이 세출로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예산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게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법을 무시하고 누락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이 법안을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국장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입니다.

고용안정센터 기능 개편을 하면서 일부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관련 센터를 확장하는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처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같은 관서 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별도 계상을 하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단병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협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예산총계주의,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국고금관리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를 물은 겁니다.

누락시킨 것은 분명히 저촉되는 것이지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백한 위법 사실을 위법 사실이라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세입으로 바로 잡고 세출 항목에도 적용시키십시오. 이것은 명백히 정부가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이것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 법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혹시 근로기준과장님 오셨나요? 안 왔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자리에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근로기준과장이 지난번 특별검사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삼성SDI와 삼성전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해서 특별조사를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 되어서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제를 가지고 죽 하다가 마침 삼성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2개의 결과를 받아 보고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장관님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신 삼성SDI 특별조사결과보고와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것을 보고 다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판단 기준 문서를 또 보냈는데 이게 최종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결과 보고할 때 제가 문제를 삼았던 박광욱 씨의 과다한 잔류 시간 문제는 산재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삼성SDI가 임의로 만들어 준 것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허위 문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맞습니까? 이것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저희가 해당 공장에 근로감독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 박광욱 씨의 연장 근로 시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산재 판정을 했던 기관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이 되고 삼성SDI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되는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 문제는 일단 저희 노동부에서 파악한 상황을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지할 예정이고요. 관계 산재보험법상에 부정 수급을 위한 허위 서류의 신고라든가 작성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로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쟁점인 휴식 시간이 근로 시간인지의 여부와, 그리고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생산직, 사무직으로 나누어서 "생산직의 경우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팀별 공정별 라인별로 관례적으로 휴게가 부여된다" 이렇게 해 오셨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사실 관계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 규칙을 고쳐야 됩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궁극적으로는 취업 규칙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원식 위원 궁극적이라면 몇 개월이나 더 있다가 고쳐야 되는 건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아니,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원식 위원 이 취업 규칙에 보면 작성할 때 시업, 조업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게 시간이 지금 적혀져 있는 것과 다른데 그러면 취업 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삼성SDI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인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관습헌법인지 그것 때문에 아주 골이 아픈데 여기에서 또 관례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 되어서, 참 이것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 해석을 다 했는데, 관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취업 규칙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러니까 근로시간……

○우원식 위원 관습헌법 얘기하지 마시고, 생산직의 경우 이렇게 바꾸려면 취업 규칙을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된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을 제대로 감독 안 하면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감독관 임무 중에 취업 규칙을 잘 살펴보고 제대로 안 되었으면 고치게 하는 임무가 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실 생각이 있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현실적으로……

○우원식 위원 삼성SDI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삼성 다니신 적 있나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위원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삼성만이 아니고……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 아닙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취업 규칙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그 신고 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우원식 위원 신고를 받았는데 삼성SDI가 취업 규칙에 시업·조업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취업 규칙 작성 신고에

반드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시업·종업 시간도 없는데 신고 받으면서 왜 그것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로감독을 잘못한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취업 규칙……

○우원식 위원 지금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 강도에 따라 50분 근무 10분 휴식, 60분 근무 20분 휴식, 80분 근무 20분 휴식 등 여러 형태로 휴식 시간이 부여되고, 식사 시간은 30분 또는 60분을 준다, 휴게 시간이 간헐적으로 부여되기는 하나 규칙적으로 부여되고 있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며, 휴게실 등에서 자유로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근무를 했는데 다 빼고 8.6시간 근무했다는 삼성SDI의 판단이 맞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노동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사는 근로 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게 무방하니까 그 시간 안 줘도 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보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노동부처럼 휴게 시간을 해석할 경우 근로 시간이 길어지고 임금 저하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답을 "작업 개시로부터 종료 시간까지의 시간 중 휴게 시간이 넓게 인정될 경우 회사 잔류 시간이 길어지고 실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시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길어져도 괜찮고 임금을 그만큼 깎아주어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 삼성SDI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자선사업을 하는 회사가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국 신규 사업 가운데 주40시간제 교육·홍보로 5억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국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사업주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대구지방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토요일근무 40시간제 실시 사업장 9개는 모두 개정법 취지에 따라서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주6일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해서 하루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연간휴일수는 축소되는 상황이 법취지에 맞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주 40시간제로 단축한 시간 안에서라면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다음에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축소과정에서 근로시간 축소에 관한 합의는 그냥 관례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저희로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그러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우원식 위원 작성 안 해도 된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여부를 따질 때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44시간제에서 40시간으로의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일뿐 출퇴근 시간, 즉 근로시간의 변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렇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주6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출퇴근 시간에만 변동이 없이 매일 점심시간을 40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분에서 6일 없으면 240분, 4시간이 되는데 이것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점심시간 40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 변동 없는 조건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문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 점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까지 대답하신 대로 하면 관례로 인정할 수 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관례라는 의미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뜻인데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이것 괜찮다는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법 적용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점심시간을 40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 관례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것은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법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법은 조문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관습헌법 나와서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결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을 해석할 때도 관습이나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 하고 내일부터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런 뜻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복되고 지속되었느냐 이런 판단을 상식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다음 질의인데 사무직과 생산직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다릅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같지요. 삼성SDI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업규칙에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1일 근무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다르게 되어 있냐고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휴게시간이나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사무직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생산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 공정별, 라인별로 관례적으로 휴게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휴게시간을 저희들이 정의할 때는 사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무직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고요.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런 기준에 따라 보다 보니까……

○우원식 위원 그다음 물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96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시업·종업 외 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게시간이나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관례에 따라서 변동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변동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동된 내용을 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 우리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하나 잘못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괴상망측한 논리에도 다 동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위험한 논리를 노동부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과 실제 근무조건이 달라졌다고 해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 안 했잖아요. 변경 안 하고 관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근로자 측의 어떤 반대의사가 없이,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로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이고 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거나 관련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가 더 많은데 국장님한테는 그만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감독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로감독이 실시간보다는 실제로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감독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방금 우원식 위원께서 심층적으로 제기하신 바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 가져온 해석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삼성SDI 같은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다 월급을 줘서 다행인데, 악덕기업주의 경우 12시간 데리고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다 빼고 나니까 8.6시간이다, 보통은 8시간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넣어서 9시간인데 점심시간 30분 주고 시간마다 20분씩 쉬게 해서 12시간 했는데 실근로시간이 8.6시간이니까 8.6시간만 앞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맞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노사가 시간과 임금의 지급방식, 액수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니지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원식 위원 또 하나 물어보면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관례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문서상의 조건과는 달리, 관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감독의 수준은 노사가 그런 수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았다면…… 별로 시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시간 감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시간 감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내부적인 검토와 반성을 하겠습니다.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원식 위원 제가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느꼈던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 노동부의 이번 삼성SDI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이 해석에 대해서 노동부와 환경노동위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중입니다마는, 잠시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이신 박희태 위원님 대신에 이덕모 위원을 잠정적으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모 위원님, 예결기금소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기금소위 위원으로 영광스럽게 선출되신 이덕모 위원의 발언시간입니다마는, 그 기쁨을 잠시 이인제 위원에게 좀 옮겼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李德模 委員 예.

○위원장 이경재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내년에 약 9조 1000억 원 정도 여유자금 운용계획이 있고 또 산재보험기금 가운데에서도 218억 원인가 여유자금이 있네요. 다른 기금에도 조금씩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보도를 보면 내년에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뉴딜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는 이런 정책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거기에 관해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인제 위원 노동부장관은 논의과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 부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지금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연기금이나 이런 여유자금이 실제로 증시에 투입이 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을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근로보험심의관 이상석 근로보험심의관입니다.

내년에 연기금 주식투자 관계는 실제 저희 노동부는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일부 주식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증시투입 정책이 결정되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고용보험기금이나 산재보험기금 가운데 여유자금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증시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금관리자, 그러면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만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나 이런 큰 정책이 결정이 되면 예외가 아닐 것 아닙니까? 연금까지도 투입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장관께서 단순히, 노동부장관도 경제의 중요한 한 분야이고 또 장관께서는 경제학자이시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44%라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거의 다 작전단이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여의도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회사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의 애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앞장서 가지고 금리가 지금 제일 제로 금리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하면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세력의 배만 불려주고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렵게 쌓아놓은 연기금을 다 들어먹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데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때로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연기금을 증시에 넣는 것은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우려하셨듯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 연기금들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시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의 증시 투자를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시 투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안정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고, 다만 이른바 뉴딜정책과 관련한 자금 운용은 증시의 투자방식보다는 민간 자본을 투자하게 해서, 연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연기금을 묻어 놔 봤자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SOC나 이

런 데 투자하게 하고 정부가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서 기금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연기금 활용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인제 위원 긴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나만의 걱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이고 장관님 이야기는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증권시장,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불건전한 자본시장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돈을 거기에다가,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정책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부 산하의 중요한 기금을 잘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까 담당국장이 이야기드린 대로 노동부 기금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정책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이인제 위원 그런데 경제장관 중의 한 분이시고 학자시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회가 있으면 이에 관한 제 개인적인 소신과 견해가 있으니까…….

○이인제 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산하 공무원 가운데 전공노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노동부 직원 가운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인제 위원 산하단체 공무원 중에도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인제 위원 파업은 거두어 들였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업무복귀를 하면서도 또다시 26일 민노총이 파업할 적에 합세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보도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징계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시·도지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중앙공무원은……

○노동부장관 김대환 중앙공무원은 관서장입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징계에 관한 지침 같은 것은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노동부가 작성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니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이인제 위원 행자부에서 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침이 작성되어서 지자체로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행자부에서 한다니까 제가 자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칙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중징계, 여기에서는 파면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지만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한 국면이 아니냐, 국민들 감정이 매우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편승해서 대량 파면을 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두고 두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관계장관회의에서 징계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공감했습니다.

○이인제 위원 노동부장관께서, 주무부서는 행자부이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노동 문제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중징계는 파면만이 아니라 파면, 해임, 정직까지 중징계에 포함됩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전공노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했다고 이슈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노동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맞아요? 안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쌍방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노동부에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판단을 갖고 계셔야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단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에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래서 전공노사태가 악화되고 확대되기 이전에 과연 노동부나 행자부,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설득이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궁금한데 주체사상 교육 같은 것도 책임 있게 정부가 판단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작은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하니까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이 사태가 잘 해결되도록, 공무원노조 어차피 제도화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노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模 委員 고용보험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약 12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중에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알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하나씩 보지요.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0억인데 내년에는 554% 증액해서 78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개별사업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심영철 고용정책심의관 심영철입니다.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78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감안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신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692억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산만 갖다 놓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2001년에 4.7%, 2002년에 11%, 2003년에는 예산을 반 이상 깎았는데 그래도 74% 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심영철 그런데 그 사업 전체가 종전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아니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신규로 내년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내년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본예산이 유사한 성격이니까 그렇게 신규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8월까지 집행액이 30.6%이지요? 연말까지 하면 약 45%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을 늘려가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노동부가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안 그러면 쓸데없이 과다한 계상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심영철 종전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예산이 다소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도에 계상된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10월부터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다계상 여부 자체는 실제로 그 제도를 시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李德模 委員 제도를 시행해 봐야 아니까 지금은 그러면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네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 69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근거를 갖고 692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과다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을 해봐야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德模 委員 692억을 빼면 그래도 약 100억이 됩니다. 올해 120억 가운데 사실은 집행이 한 45% 밖에 안 된다면 내년에는 실제로 거기에 맞게 한 60~70억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대로 1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과다 계상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으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한 40% 정도 달성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李德模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10%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증액해도 됩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입니

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중에 불용부분을 남기는 중요한 것이 육아휴직장려금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복직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추계 시 육아휴직 급여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李德模 委員 미리 받아놓은 것입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10월 말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수는 올해 7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7455명으로 올해 말까지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李德模 委員 10월 말이 그렇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李德模 委員 9월 말까지 2840명이었는데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자가 복직 후 30일 이후에 기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수의 한 40% 정도가 육아휴직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업자들이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후 30일 후에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德模 委員 한 40% 정도 예상되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李德模 委員 그다음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말까지 집행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행률이 2.9%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李德模 委員 여기에 56억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억 6000만 원을 썼거든요. 연말까지 한다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액은 여기에서 다시 21% 증액해 가지고 68억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으면 올해 집행되는 부분하고 대비해 본다면 거의 한 20배 정도 잡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래도 됩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당초에 금년 예산 대비해서 다소간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금년 초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당초의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서 전 규모 전 업종으로 확대를 했고 또 현재는 채용 후 첫 6개월간은 50만 원 그 후 6개월간은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수준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첫 6개월은 6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 원씩으로 인상조정할 계획입니다.

○李德模 委員 이게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항목들은 집행률이 10%가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매년 그런 예산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2003년도 결산안 할 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 예산만 늘려잡는다는 말이에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금년에는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李德模 委員 사실은 여기에 보면 무수한 사업이 있는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이런 것이 다 10% 안팎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아까 김 위원이 지적했지만 작년에 1%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크게 늘려 잡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런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장려금들이 법정지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추계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과소추계가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게 몇 년간 해 보면 매년 얼마가 집행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으면 과다 계상이라든가 불용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편성방향 해 가지고 보니까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소요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폼으로 써놨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 이월되는

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 200억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맞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하는 자영업 창업자금융자사업하고 목적도 같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부처도 같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창업자금융자사업과 비슷한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담보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융자가 결정이 되고서도 담보력 부재로 융자가 취소되는 사태가 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래서 자영업 창업융자사업은 90억 예산 중에 36억이 현재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그것은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李德模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잡혔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李德模 委員 그런데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은 내년에 200억을 잡아놨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영업장소 지원입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올해 100억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올해 저희가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러면 300억을 내년에 다 쓰게 됩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최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상가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내에 상가매입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 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영업장소를……

○李德模 委員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6월 23일에 나온 이야기대로라면 6월에 추가경정예산을 받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놓고 난 뒤에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집행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내년에 다시 200억을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100억을 더 받습니다.

○李德模 委員 아니 내년에 200억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처음에 이 사업의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는 단독집합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애인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집합건물 하나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장소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매입해서 장애인에게 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저희들의 검토가 있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받을 때는 그 해에 집행될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 안 된 것을 6월에 받아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연말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됩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상가계약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다음에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정책실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러닝 훈련과정을 훈련정책과에서 담당하니까 그 사업만 따로 떼어 가지고 거기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된 130억 중에 8월 말 현재 약 34억이 집행되었고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는 한 51억으로 한 39% 정도 집행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 260억을 계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확 늘려 잡아도 됩니까?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가 늘려 잡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이 280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9%정도 감액을 해서 254억을 반영했습니다.

○李德模 委員 금년도에 280억을 책정했다가 실제로 120억을 실업자재취직훈련사업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예,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이게 조정되어 가지고 13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30억도 현재 집행이 한 3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2배로 늘려서 260억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년에 어떻게 집행되겠습니까? 130억도 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260억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은 근로자 자율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이 사업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대상이나 지원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임시근로자나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요. 내년도에도……

○李德模 委員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으면 내년에도 역시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되는데 매년 늘려 잡고 매년 집행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못한 공무원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일을 안했거나 쓸데없이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물론 이런 게 다 감안이 되겠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공성진 위원으로부터 5분을 받으시고 정두언 위원으로부터 2분 30초를 받으셔서 15분에 더해서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면 주변의 고운 눈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2005년 노동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진료비 심사의 효율화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기억합니다.

○장복심 위원 지난번 국감에서 본 위원이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우리 장관님께서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용역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데 이번 2005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딱 그 명목으로는 편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산재보험연구용역개발비로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물찾기로 찾아보니까 심사일원화 명목으로는 안 됐지만 산재보험연구용역개발비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아,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재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 일부 부서에서 이관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게 원래 장복심 위원께서 심사 일원화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사실상 요것만 가지고는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허위부당청구라든지 특히 요양에 있어서의 장기요양문제 이런 등등을 이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여러 가지 관행상 불편한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마음을 열고 용역을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세 부처 합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진료비 심사를 만일 이관한다 했을 때 발생되는 조직이나 인사문제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문제

이런 것이 주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입장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알고 계실 텐데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8개 기관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의 임금편차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일직급·동일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하기관 간의 임금편차가 한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을 100으로 했을 경우 5급 5호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기능대학은 73.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7.5%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술교육대학은 86.8%, 산재의료원도 87.2%로 10% 이상 급여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민노총·한노총 같으면 크게 데모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의 차이가 급수가 높아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10%,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또 똑같이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안 하시고 계속 가실 것입니까? 장관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임금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의 임금은 사실상 기획예산처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관이 언제 설립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금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지금은 뭐든지 맑게 밝혀지는 사회고 공평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공평해야만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계실 때 이것은 명확하게 기본 틀을 잡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디에서는 100만 원 받고 어디에서는 8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태파악부터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의 업무 중에서 CBT 검정시스템 있지요. 이 검정시스템을 2003년 1월에 국가기술자격 등 검정관리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검정방법을 도입했고요. 2003년 6월에 시험문제지 유출사고가 크게 자꾸 나기 때문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CBT 검정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국가기술자격검정 중장기 발전계획에 동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 문제 은행에 대한 DB 접근이 암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정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또 보안성의 유지가 탁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 수검자가 시험결과를 즉시 알 수 있고, 또 고객편의 위주의 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예산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예산이 필요한데요. 2005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50억 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마침 산업인력공단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예,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장복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CBT 검정시스템이 분명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도 꾸준히 이 사업 계획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320억 원이 1년 연간 예산입니다. 그런

데 이 50억 원도 앞으로 자동 발간 장비 이런 부분들 하면 한 몫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 예산 당국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가능한 한 자체 수입을 확대를 하고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가검정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50억 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을 향해 가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 데 국가에서 실행하는 자격시험들이 부정이다 이런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5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타 부처의 다른 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반사이익이나 국가의 공신력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장관께 부탁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장관님 계실 때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앞으로 장관님이 한 5년은 더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악담에 속합니다.

○장복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4년만 계십시오.

다음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동화시스템 구축, 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험문제 발간이 국가기술자격검정 616종 그리고 수탁 검정 3종목……

엊그저께 치른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것은 17만 명이 쳤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예.

○장복심 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업무의 비능률성 그리고 직원들의 장기로 죄 없이 가족과 격리되고, 피로의 누적 또 업무 수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장복심 위원 그런데 수작업보다는 시험문제 발간장비를 자동화하면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양질의 시험문제를 수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니까 예산이 37억 원 정도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도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예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사장님께서……

○장복심 위원 괜찮지 않은데 그냥 이사장님이 하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평균 134일 정도 격리 수용되어서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설치된다면 약 70일 정도,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그분들 고통도 완화할 수 있고 시험도 훨씬 능률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부 당국하고 또 예산처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복심 위원 제가 힘이 모자라서요. 힘만 되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 가까운 지인이 여기를 다니는데 일요일이 한 번도 없어요. 명절인 추석날, 설날 외에는 거의 안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가 봤더니 너무 쪼들리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적더라도 정말 보람되고 그래도 자기가 즐기면서 직업을 갖는 그런 좋은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혹사시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더 애를 좀 쓰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 다음은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중에서 산재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산재 관련단체로부터 산재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복지행사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다가 집단시위까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복심 위원 또 누구입니까? 누가 자세히 압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나와 계시니까 이사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빨리 일어나십시오.

현재에도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소요 비용을 가입 회원의 회비나 기업체 공공기관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예.

○장복심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억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재보험기금회계로 편성하면 1억 원 정도 가지고 산재로 불구가 되거나 오랫동안 앓거나 또 그것을 간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환자가 되어서 너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년에 한 번쯤의 이런 위로잔치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우리나라 산재단체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산재단체가 5~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해 보면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산재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때문에 산재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 위원 전 대통령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고 배고픈 짐승을 건드리지 마라, 먹을 것을 주고 잘 달래서 사랑으로 하면 따뜻한 햇볕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순화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짐승도 그럴 텐데, 놀다가 그랬으면 개인책임이지만 일하다가 사람이 다쳤고 불구가 되었고, 또 국가적으로 좋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국가에서 투자해서 모범을 보여서 가족들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위로잔치를 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타 단체들도 고무적으로 많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자체가 하는 산재환자들을 위한 행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단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장복심 위원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예, 직접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 돈은 얼마나 듭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것은 꽤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할 경우가 있어서 했더니 굉장히 통화하기도 어렵고 얼굴들이 그냥 아주 노랗게 찌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근로복지공단 직원 중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상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굉장히, 특히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 민원상담하는 데 고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희망차게 여기에 들어왔는데 얼마 동안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냐 했더니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든 그렇거든요. 제일 어려운 곳에 가 있을 때에는 처우 개선을 좀 하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상담 경비를 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주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7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장관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 부서를 다 안 가려고 하면 희망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원리상 옳은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거나 공단의 임금, 보수는 상당히 예산상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도입이 실제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가장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을 독려하면 다른 부서도 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 매년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수당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양해해 주시면, 마침 오늘 노동위원회위원장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장복심 위원 나오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고 있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 그리고 변호사 또 전문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에 못 미치도록 너무 수당을 적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잖아서 말을 안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기에 안 오시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회의참석을 유도하거나……

(이경재 위원장, 배일도 간사와 사회교대)

굉장히 회의참석률이 떨어질 때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신홍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노동위원회 위원을 한 20년 했습니다마는, 점잖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준비하시는 시간도 많고 또 나와서 소비하시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기본사업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추가 소요를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는데 아마 일괄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장복심 위원 보니까 회의를 2003년 한 해 동안 거의 1000건을 했고 2004년에는 1215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너무나 적은,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기도 죄송한데, 한 번 나오면 6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고……

○중앙노동위원장 신홍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중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중앙노동위원장 신홍 어려운 일입니다.

○장복심 위원 그래서 수당을 어느 정도는 상향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수당을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조정하는데, 정부 내에서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고 등을 감안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차별적으로 수당이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배일도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지요.

순서가 있으니까 이따가 하시지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좋지요.

○장복심 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일도 장시간 동안 토론 중인데 시간이 오래 계속 되다 보니까 답변자들 긴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효율적인 대체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가급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문제 등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상임위라든지 국감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많이 질의했었고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산정하면서도 많은 신경을 썼을 줄로 믿습니다.

2005년도에 2004년에 비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개선된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관해서 효율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추가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예산편성과 국회와의 시차 때문에 10월에 지적된 부분들 가운데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9월에 이미 2005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별사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통폐합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정확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의견들이 반영되고 개선방안이 포함된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가령 연수지원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89.5%가 대체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연수를 하는 곳에 있어서 공공영역과 비공공영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 현재 민간부분이 사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5%가 민간부분 연수이고 나머지 4분의 3이 공공부분 연수입니다.

○김형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부분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성격이 너무 단순한 아르바이트 같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경험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래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충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을 2005년도부터라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부 2005년도 예산에 민간기업에 대한 연수지원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4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양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예산항목을 보니까 대충 전체 연수지원제 예산 42억 중에서 한 10% 정도인 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인원수는 6만에서 7만으로 늘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인센티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반 정도만 계산해도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불과 1만 2000원 정도의, 물론 형식논리적 접근입니다마는,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과연 적절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체 항목 내에서 무엇인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추구하려면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좀더 진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실태조사부터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려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내실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국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의된 바가 있었고 장관님께서 일정 정도 사중손실 효과의 문제라든지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비판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의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데 대기업은 충분히, 물론 현실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5억 400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해서 사중손실 효과의 합법화로 가는 그런 위기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결국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이 기금을 너무 쉽게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실업률을 낮춰 보려고 충분한 실증적인 자료 없이 이렇게 한 측면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적하신 사중손실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같은 데서 사실상 자기들이 쓸 인력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 설령 그런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차등을 두어서 대기업에는 이중적인 특혜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더 박탈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동부장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에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대기업 쪽하고 중소기업 쪽의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중손실 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잡월드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쪽 재원들을 주로 쓸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의문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재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 5월이면 일단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아 본 다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고용보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그다음에 여의도성모병원 진폐병동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중앙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어떻게 예산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모병원에 대한 지원 방법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입원 환자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통원치료는 성모병원에서 계속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는 기존의 지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형주 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존의 진폐 보조금이라는 것은 산재보험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원하고 있는 진폐환자들이 안산중앙병원으로 옮겨가는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폐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그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성모병원에서도 입원실 사용에 따른 자기들의 수익성 저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복지 영역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외국에는 이미 세대별 라이프 사이클별로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지원 방법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른데, 특히 청년장애인들의 지원을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장애인 일반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년장애인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에 대해 이제는 참획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정책이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소위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을 특성화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일반 청년 실업률에 비해 장애 청년 실업률이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에서 예를 들면 2004년 5월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서울시장

애청년인력개발센터가 개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청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 보조 54%, 노동부 지원 요청 46% 해서 노동부로부터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항목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장애인 실업 문제, 인력개발 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가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직업상담원 노조와의 갈등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조금 더 인건비 상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최대한 관심을 쏟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얼마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적이 있으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최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차수가 몇 차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니까 양해하신다면……

○배일도 위원 제가 말해 버릴게요. 15차입니다.

그러면 이번 15차에 응시한 응시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도 말씀해 주시지요.

○배일도 위원 그것도 제가…… 말을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한 23만 명 된다고 그래요.

1인당 응시수수료를 얼마씩 받았어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사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이번에 23만 명은 아니고 한 17만 명 정도 됐는데, 수수료가 평균 2만 원 정도 됩니다.

○배일도 위원 총 들어온 돈이 한 58억 정도 되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얼마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17만 명에 2만 원씩 잡으면……

○배일도 위원 아니,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한 34억 되고요. 정확하게 집계를 하더라도 40억 미만입니다.

○배일도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과정이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예.

○배일도 위원 지금 몇 %나 합격했고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아직 정확하게 채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가채점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일도 위원 전례로 보나 최근의 예상 합격률로 보나 이것이 그냥 일정한 숫자를 정해 놓고 합격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합격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지요. 그렇게 볼 때 몇 % 정도나 합격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년보다는 합격률이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일도 위원 대략 한 1~2%대 정도가 되겠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글쎄요, 지금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여의도공원에서 시험에 응시했던 5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예, 알고 있

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험을 무효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돈도 물어봤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에 사업비가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이 예산은 일종의 수입대체 경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출연금보다는 저희가 예상한 수입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비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순전히 시험에 관한 관리비입니다.

○배일도 위원 순전히 관리비로 책정이 된 건데, 실제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보면서 그만한 돈이 수입금으로 잡히고 실제 합격률은 1~2%에 그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장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난해한, 물론 변별력 테스트도 있고 선두열의 일정한 숫자를 합격시켜야 되는 고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난해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되는 직종은 아닐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공단은 순전히 자격 검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난이도나 변별력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인력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일도 위원 물론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기관 간의 문제 지적도 계속되어 왔고, 또 출제위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면 누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옆에서 차관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장관께서 해결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산업인력공단은 '우리는 그 업무밖에 못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 이 부분은 건교부장관께서……

○배일도 위원 건교부가 됐든 국무회의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정부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안 그래도 오늘 건교부장관과 다른 회의 시에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교부가 주무부처인데 건교부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수수료 문제, 물론 일정 정도의 수수료는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돈장사 한다는 이런 오해를 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응시자, 이번에 미응시한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23만 명 중에 17만 명이 응시했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접수는 해 놓고 합격률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보고 응시조차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내 달라 그러니까 못 내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비롯된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환불제도가 없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응시자의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옛날처럼 그냥 물리적 집단력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고 청산되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의 통로, 해결의 통로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그와 같은 집단력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로 발전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률이 저조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

라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에 개선방안을 낼 수 있도록 현장에도 인원을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자격시험의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이 시험을 무효로 해 달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다중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배 위원께서는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불신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동의 이런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을 100%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더라도 경우가 다른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몫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됐으니까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게 안 해야 되지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다소 모순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배일도 위원 어쨌든 그것은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방만한 예산을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 주요한 내용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저는 한나라당인데, 그것을 좀 깎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운용이 잘못되면서도 제대로 되는 것처럼 형식주의가 판을 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의 총 숫자가……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것도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말씀하시지요.

○배일도 위원 지금 1221명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통계가 금년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총 취업자 숫자가 2290만 명, 이 중에서 임금 근로자는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국민 몇 사람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대체로 아까 그 수치에 기초해서……

○배일도 위원 건수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에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거의 9000명~1만 명의 피고용자를 한 사람의 근로감독관이 관리를 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지요. 한 1만 1000명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나온 통계인데, 혹시 한국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가 대체로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배일도 위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54명, 우리가 86만 9000명으로 볼 때 4700만 명이니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여기 근로감독관은 아까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만 1000명 정도 관리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체불임금 문제나 사전 지도나 예방, 노사관계의 안정화나 엄정한 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실제로 그 실상에 거의 가깝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증원 문제는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라는 이야기가 기만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근로감독관 인원을 확보하려고 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부 간부들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

문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인원 늘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배일도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세금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데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과연 근로감독관을 이런 상태로 두고 국민이 높은 질의 근로감독을 원한다면 이것은 국민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민은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기해서 어쨌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작업을 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고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안 되면 법으로 제정해 버리려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배일도 위원 제가 법안을 내면 당정협의를 거쳐서 제 법안에 동의를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질의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책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의 정책을 많이 씁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쉬운 방법이지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톱다운 예산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러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소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다음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한 신뢰,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참 말은 좋은데 모순되는 관계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 같으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이면 삶의 질 개선에 이번 단계에서는 치중하자 이렇게 했을 때 정책목표와 수단이 일치해서 혼란이 안 일어나는데 대부분 보면 좋은 용어들을 한 번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제 한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종길 위원 저희가 이번에 죽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국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고 실제로 반영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안은 9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17대 국회가 목표하는 예산은 사실 2005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2006년도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2006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아마 장관님께서도 1년이 채 안 되셨으니까 아직까지 구조나 예산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차관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모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지적이 많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결국 일하고 예산하고 맞물려서 2005년도에 면밀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경량화된 조직으로 같은 예산에서도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감에 지적된 사항을 중점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먼저 기대하고요.

또 저희가 오늘 지적하는 사항도 대부분 보면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기보다는 그 예산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표현은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2.8% 감소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800억 원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2004년 예산에 추경으로 그것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한 2004년도 예산에 비하면 일반회계는 그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이 800억 원이 2005년도 본부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금액이 가속도를 붙여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갈상태에 있고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마이너스로 곧 돌아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는 많이 깎여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나머지 800억 원을……

○제종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 받으셨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다음에 재정융자특별회계로 800억 원 받았는데 이것이 매년 이자가 40억 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금 운용에 사실 부담을 줍니다.

○제종길 위원 게다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그러면 앞으로 줄어드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장려금도 그 제도를 잘 따져보면 기업 입장에서 선호하니까 실제로 2% 넘게 고용하기도 하고 또 2% 가깝게 고용하기도 한다는 말이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줘야 할 돈은 늘어나고 걷히는 돈은 적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누적적으로 내년에는 보나마나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본부 예산의 10%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고 17대 국회와 협력해서 일반회계로 넣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전망·운용 그리고 그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심층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12월 말입니다.

○제종길 위원 연구결과를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국감 때 잠시 지적한 얘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을 국고로 대행해 주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보니까 예산안 더 축소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산안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전년도 집행수준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편성한 액보다도 사업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국고지원사업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지원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국감 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도 잘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실 예산도 크지 않으므로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하고 다른 예산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 예산은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요한 예산, 그러니까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예산부터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적어진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그렇지는 않고요. 공단의 출연금 예산 내역 속에 들어 있는데 대체로 사업수요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밀린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클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린 사업이 제가 사는 지역 공단에 확인해 보아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을 좋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역시 국감 때 보면 지역마다 업자가 같고 전체를 한 업자가 하게 되고, 비슷한 유사직종도 의정부에서 하면 다른 작업환경을 구성하고 안산에서 하면 또 다르고 해서 잘못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올해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인데 잘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칭찬받는 사업일수록 꼼꼼하게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예산은 많지 않아도 노동부의 간판사업이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구두로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지원이 엄청나고 민주노총은 지원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민주노총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민주노총이 400억 원을 건물구입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노총에 대한 지원형태는 대체로 연차적으로 죽 하는 것이 관례였고 한꺼번에 400억 원을 하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이 아주 개략적인, 쉽게 말하자면 '사업에 몇 평 몇 평의 건물이 필요하니까 400억 원 달라' 이런 정도의 아주 거친 계획서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제종길 위원 저도 그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노사협력사업 아닙니까? 노사협력사업인데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을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증액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원래 두 차례에 걸쳐서 반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쪽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리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전부 마쳐야지 기간에 인터벌이 생기면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종길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 오랫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는 정부랑 협력이 잘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정부가 필요한 서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약 9억 7000만 원, 그다음 2004년에 10억 원, 이것이 건물임차료인데 반해서 한국노총은 이렇게 해 주면 건물을 노총이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건물임차료를 대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민주노총이 건물임차료를 받아갔다고 하면 저는 매년 그 정도의 건물임차료 또는 약간 이상의 건물임차료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건물 지은 것을 단번에, 그리고 사실 400억 원이라는 돈을 한 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건물을 옮겨서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활동에 필요한 것은 협력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좀더 넓은 건물로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임차료는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교육사업이나 등등의 협력사업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한 것은 400억 원짜리 건물 구입하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저희들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민주노총에게 그런 서류를 다시 내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더 이

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으로 당연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종길 위원 사실 예산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과도 어차피 내년 1월부터 큰 틀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전향적으로 기존의 예산을 파악하고 필요를 파악해서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2005년도에도 가능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장관의 답변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때는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필요하면 속기록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를 비롯해서 이러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도 했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노동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노사문제를 격화시키는 모습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매우 단세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공무원노조 법안과 관련해서 1988년 그때 대통령께서……

○단병호 위원 아니 저는 용어사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지요. 제가 그 용어사용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의 상황하고 2004년의 지금 현재 이 법안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다가 도덕성 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아마 이런 것이……

○단병호 위원 그러면 '단세포'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로 사용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병호 위원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장관! 참 대단하십니다. 그 단세포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죽 말씀만 하시고 제가 충분하게 답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단병호 위원 압축적으로 하면 아무런 용어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런 대로 사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단병호 위원 아니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주무장관으로서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데 대한 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회의 규정이 15분으로 질의와 답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제 소회와 소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장관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관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질의하던 위원이 자기 견해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주장을 얘기하는 모든 것에 다 반론을 얘기하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번 저는 장관이 답변하고자 할 때 장관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국감 때도 그래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한나라당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장관을 답변자로 세우지도 않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를 답변자로 안 세운 기억은 없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래요? 기억이 없다면 또 어쩔 수 없지요.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라든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상임위에 임하는 모습이 참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회의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관이 답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단병호 위원 용어사용이 장관으로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경재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흔히 듣기에 강의식으로 설득하려는 식으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뿐 아니라 또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관으로서의 답변자세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지요.

○이목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저는 우리 국회의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장관이나 총리가 답변함에 있어서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인정도 안 하고 막말해도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답변하러 나온 총리나 장관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 언론이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총리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단병호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5분 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종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칠게 한 것을 보완해 오라고 했는데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3월 26일에 건물구입비로 해 가지고 350억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요청을 해 가지고 4월 19일에 400억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서 서류를 냈고요. 또다시 보완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6월 7일에 또 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검토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 민주노총 산하에서 노동부 조사관 면담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 보라 이렇게 노동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8월 24일에 다시 또 임대료 수수료를 119억으로 수정해 가지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기 담당관들을 다 만나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사실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조정식 위원이 질의하고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하실 때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과 관련된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니까 퇴직금이 다 산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직업상담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고 오래 있는 사람이 7년인데요.

○단병호 위원 평균이 한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중간정산을 유도해 가지고 퇴직금 일부는 중간정산을 시키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도 제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단병호 위원 일부는 정산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한 5~10% 정도는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시킨 직업상담원은 없습니다.

○단병호 위원 없어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다만 일일취업센터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일부 폐지하면서 근무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단병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퇴직금이 다 정산되고 있지는 않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금은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매년 사업비로 책정되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사업비에 있지만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퇴직금도 현재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편성되고 있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근속연수가 평균 5년이 되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현재 인건비 편성이 실제 정원보다 과다 계상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현재 17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1776명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지금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얼마를 편성해 놨습니까? 여기에 편성된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 보면 임금에다 12개월, 1766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1700명에 대한 5년간의 그 많은 퇴직금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현재 실제 인원이 1720여명 되는데 그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거기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제 얘기는 아까 퇴직금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1700명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면 퇴직금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병호 위원 퇴직금을 적립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속에서는 퇴직금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까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한꺼번에 전원이 퇴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병호 위원 그것은 매우 임의적인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퇴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0명이나 150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상담원들의 퇴직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이 발생할 경우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예측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현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 중에 잔여금을

가지고 일부 퇴직자에게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것으로 하지 퇴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아까 단병호 위원님과 장관님 사이에 민주노총 건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고자 자료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약간의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400억을 처음 요구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장짜리 그런 용지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는 몇 년에 걸쳐서 첫해는 제 기억으로는 5억인가 신청했고 그 5억 가지고 건물 설계와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백 억이 되도록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종 확인할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임차료 같은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다시 그렇게 접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2005년도에는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장관께 요구를 드린 것이고요. 아마 단병호 위원님도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차료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관께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협력차원에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과 국무위원으로 출석하신 장관 간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인양 의제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법률적 사항이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여기 와서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발언을 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무위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질의한 위원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법률적 사항으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 전체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장시간 길어진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운영규정을 고쳐서라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본회의 운영처럼 답변시간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다만 답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위원 자신이 정해진 사안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는 그 조항을 숙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배일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로 이미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만날 시간만 얻어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남은 시간은 우원식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클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억이 늘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고소음 발생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에 35억이 책정되었고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203억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소음 발생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은 산재기금에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지만 두 사업 모두 산업안전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클린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고 유사한 신규 사업 두 가지가 내년부터 추가로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데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김영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단답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산업안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클린 사업팀을 만들었고 인력도 추가 증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진행 중이면 다행입니다.

저는 예산을 살펴봤을 때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임금 때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추가질의 시간은 할애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여튼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노사정책국장님, 노사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사업의 노사 교섭 분규 실태 분석·평가 실시사업이 있지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취업과 종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이 변동되고 휴게시간 변동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변동되고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관례에 의해서 휴게시간과 출퇴근 시간, 그리고 교대근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업의 경우 예산에 나와 이런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저희가 노사 교섭 분규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면서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주요 업종별로 노사관계가 갈등요인도 많은데 종합적으로 분석이 한번도 못 되어서 주요 8개 업종에 대해서 금속, 공공부문, 병원 전체를 놓고 전문가들이……

○우원식 위원 이렇게 관례에 따라서 막 하는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만한 사례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느냐의 감독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노사 간에 갈등을 느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우원식 위원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을 하는 일인데 이렇게 관례에 따라서 막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은 안 하세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저희가 노사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노사 간에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노사 간에 불신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큰 경우에……

○우원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데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지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예.

○우원식 위원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 근로자의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고발을 취소하라고 종용했다고 그 근로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근로자는 노조 탈퇴서를 작성했고 그 탈퇴서를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그 부분도 역시 부당노동행위 여부인지 위법의 문제로 다뤄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노사정책국하고는 이런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예, 저희들은 큰 틀에서 전체를……

○우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사례가 노사정책국장 입장에서 볼 때 정책을 세워야 될 때 올바른 기업이라고 봅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좀 판단해서 답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아까 우리 근로기준국장께서는 앞부분이 다 적법하다고 했는데 노사정책 입장에서

볼 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이기권 앞서 말씀 주신 근로시간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고요. 뒷부분은 그것이 부당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로기준국장님, 아까 다 못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할 것이 있는데 삼성SDI 취업규칙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 그것 넘어가면 1시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근로계약서에……

○우원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8시간에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제가 알기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근로기준법 내용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원식 위원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삼성SDI의 근로계약서에 보면 1일 근무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30분, 그리고 8시간 넘어가면 1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삼성SDI의 근로계약서에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 것이고 제가 8시간에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반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따질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봐야 된다, 취업규칙도 보고 근로계약서도 봐야 되지만……

○우원식 위원 이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말이에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렇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원식 위원 뭘 조사하신 것입니까? 자료를 다 드린 것인데……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노조 탈퇴서를 회사가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우원식 위원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계속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우원식 위원 그런데 삼성전자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사하는 것이 유의미할지 무의미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도 지금까지 하던 조사 형태와 바꿔서 수원사무소로 넘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괜찮고요. 하실 것이면 진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대환 장관님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노동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합니다마는 하여튼 하시려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근로계약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고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과 연결선상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정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향후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특단의 기금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책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고용 인프라사업 예산은 가급적 국가 재정, 즉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렇게는 생각을 하시고……

○노동부장관 김대환 또 그렇게 실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전체 재정적 여건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장복심 위원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같이 좋은 쪽으로 생존한다는 차원에서 더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사업보다 기금사업이 더 많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장복심 위원 노동부가 정부 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 추이자료를 보니까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일정한 기조가 없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어떤 기조를 말씀하시는지……

○장복심 위원 이것 굉장히 긴데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노동부 사업 중에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실업대책사업, 실업급여지급사업, 산재보험급여 등 주로 기금사업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데 현재 기금을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심 위원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노동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수월치 않은 일반회계 예산보다 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일반회계로 할 것은 일반회계를 하고 기금으로 할 것은 기금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국가 재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원칙에 딱 들어맞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복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일반회계 예산이 일정한 기조가 없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 있는데 저도 지쳐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 너무 지쳐서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저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을 때 '고칠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불행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전적으로 외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2년여 동안에 걸친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는—정부가 가진 원칙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일단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면 실제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에서 다소의 정상참작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목희 위원 역시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이러저러한 지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절차와 방법을 너무 따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따지면, 공무원들이 원래

하는 일인데 그러지 말고 내년에 안 된다면 다른 해라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긍정적·전향적인 검토 방향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종길 위원께서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을 400억 원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렇게 거칠고 무성의하게 했을 적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점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그런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노동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견지할 것입니다.

○이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도 하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크게 보도된 김대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대환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나라의 노동운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별 체제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노동 운동하는—시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지도부 극히 일부의 비겁함과 종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잘못된 길인데 이것을 반대하면 욕먹으니까 안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 전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파벌이 잘되면 좋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환 장관의 비판은 일응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관께서 너무 나가셨습니다.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목희 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7년 7, 8, 9월 투쟁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독점재벌과 군사독재정권의 물질적 토대에 타격을 가하는 민주화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께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장관을 비롯한 노동부의 훌륭하신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집행하는 정책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정책을 집행하는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 내지는 보좌관, 비서관들에게 작은 불만이 그런 것입니다. 머리만 굴려서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노동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노동부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벌회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귀찮아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재벌회사에 가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함께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바로 그 점에서는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발언도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온 충정어린 발언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德模 委員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정수기능대학하고 성남의 성남기능대학, 대구의 대구기능대학 이 3개 대학에 대해서 개축공사가 상당히 시급해 가지고 대구는 2003년부터, 나머지 두 도시는 올해부터 예산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전부 2006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서울 정수기능대학의 경우에는 70억 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13억 원만 부여하고,

성남에 대해서는 역시 70억 예산에 대해서 10억

을 부여하고, 대구도 70억에서 28억을 부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확 깎아 놓고 난 뒤에 한 해에 하는 것을 두 해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큰 돈도 아니고, 공사라고 하는 게 공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늘려 잡는다고 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담당 국장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그것은 예산처와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李德模 委員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2003~2004년에 걸쳐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감리비가 주어지고,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축공사도 145억 가운데 2003~2004년에 걸쳐 34억 6000만 원이 지급되어 가지고 반 이상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2006년에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확 늘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43억이라는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원래 계속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미 2003년에 예산을 그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 다 계획이 확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갖고 집행하면서 몇십억씩 깎여 가지고 한 해 더 하고 그러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처에서 일단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초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이 더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건축공사라는 것이 땅 파 놓고 건물을 짓는데 공기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1년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또 자원이 낭비됩니다. 공비가 당연히 인상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십몇 억이 더 들게 생겼는데 이런 식의 안도 관철하지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노동부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예산처에서 마지막 연도에는 총 공사사업비를 다시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결국 이런 간단한 부분도 관철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봤던 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을 턱없이 높게 잡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게 잡고 이런 것을……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깎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땅 다 파 놓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1년 늘려서 지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공사 자체가 부실해지고 비용이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기획예산처가 좌우합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그런 문제를 할 적에,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능력개발사업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예산 집행이 쉽습니다. 그런 차이라는 점을 양해하시고, 다음부터는 기간이 연장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이 부분은 다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추가질의이시지요?

○배일도 위원 예. 아까 시간이 짧아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게 한 두 위원들께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원금을 둘러싸고 그 기준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죽 전제로 드렸던 것은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 근로자 2200만 중에서 조직된 노동자, 그나마 노동3권을 부여받고 있는 노동자는 정확히 10.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9.2%는 실제로 노동3권조차 부여받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전체 취업노동자 중에서 그나마 노동3권을 부여받고 있는 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노동3권조차 실제로는 향유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할 때는 그 나머지 89%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이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할 때 그 목적이 합당하면 액수도 좀 늘려서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원금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형평성을 좀 맞추시고요.

또 정책 목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설정한 산업 평화,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단체의 존립 부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평가해서…… 평가가 안 되면 회수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병행해서 이 돈이 지원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책 평가가 없다면,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지원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점을 사회에 야기시키는 그런 돈이 될 거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원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단체 꾸린 것을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약칭해서 전공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질의자도 또 그렇게들 하시던데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배일도 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대한민국 땅에서 쓰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법을 집행해야 될 정부에서 왜 그런 명칭을 그렇게 막 쓰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공노를 따옴표 안에 넣어서 썼다가 언론에서 그것을 그냥 쓰기 때문에, 소위 전공노라고 했다가 그냥 저널리스틱하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논리에 의해 전공노가 벌인 파업은 법적인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집단행동’이라고 용어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저는 불법이냐 아니냐보다도 그와 같은 용어의 정확한 선택…… 법률적 용어가 아닌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전국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석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명, 소위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의 개념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를 사회적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필요 없는 법이라면 이 법을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이 법을 지켜 나가시려고 한다면 이 이후에라도…… 지금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단체의 권한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용어를 정확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안이 제출됐으니까 그 법안의 논의는…… 정부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법안을 제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지금 한 세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권에 기초하여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법안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주장을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단 국회로 입법안이 넘어 왔으니까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입법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또 집단적인 세력이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고 등등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정부는 입법의 취지나 배경, 그리고 그 목적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생각이야 자유인데,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기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쎄요, 철학을 얘기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못 봤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법 처리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일도 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법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답변하는데 왜 그래요.

○배일도 위원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니까 그 부분…… 좀 제약을 하면 그 제약에 따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의 의미도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좀 빠졌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시간 근로자, 그것을 일칭하여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서 또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셨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거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위 일칭하여 단시간 근로자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다 포함이 됩니다.

○배일도 위원 어쨌든 정규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이른바 비정규직……

○배일도 위원 그런데 보호를 받는 당사자가 보호가 아니라고 그러면 보호는 아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당사자가 보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직 그런 통계를 못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오히려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보호법안이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어쨌든 법안을 내신 입장에서는 보호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입수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보호받는 당사자들은 보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보다 명확히 쓰시는 것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답변해도 좋습니까?

○배일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용어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쓰는 데는 일방이 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일도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어떤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보호냐 아니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따라서 배 위원께서는 배 위원 나름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것이 보호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현 상태에서 배 위원이 보호가 아니니까 저한테도 보호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일도 위원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여기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법은 국민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부분이 존재하니 그런 부분의 존재를 보호라는 틀로써 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쎄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한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견해가 모두 빠짐없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 그리고 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이 이후에 안건을 별도로 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5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두언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형주 위원, 우원식 위원, 장복심 위원, 이덕모 위원, 이인제 위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공성진 위원, 조정식 위원, 이덕모 위원, 제종길 위원, 장복심 위원, 우원식 위원, 김형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노동부 측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심사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노동부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환경부 소관 및 노동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문개정 법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안에 대해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제종길 위원, 우원식 위원, 이목희 위원, 장복심 위원, 배일도 위원, 이덕모 위원, 단병호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안은 확정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초안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합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위원장님, 24일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공청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이경재 제가 지금 바로 알려 드렸는데……

○장복심 위원 누가 패널로 참석하는 것이냐고요?

○위원장 이경재 그것은 여야 간사회의에서 결정할 겁니다. 장복심 위원은 토론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出席委員(14인)

孔星鎭	김영주	김형주	단병호
박희태	우원식	이경재	李德模
이목희	이인제	장복심	정두언
제종길	조정식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하종범
전문위원	박용판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관	김대환
차관	정병석
기획관리실장	최병훈
고용정책실장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이기권
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산업안전국장	이채필
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능력개발심의관	백종면
국제협력관	정철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홍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其他參席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 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 동 훈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사장	박 은 수
한국노동교육원장	안 종 근

○出席參考人

나장백(대전지방노동청장)

정용하((주)신한레저 대표이사)

박홍규(호텔리베라 노동조합위원장)

【報告事項】

○議案回附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安(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11월16일 우원식·김영주·노영민·단병호·배일도·이인영·장복심·조일현·조정식·제종길·최규성 의원 발의)

11월17일 회부됨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安(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11월16일 김형주·배일도·우원식·장복심·엄호성·장향숙·제종길·김영주·원혜영·김부겸·안민석·유정복·정병국 의원 발의)

11월17일 회부됨